뉴제주일보



# 주인도 몰래…남의 묘지 불법 개장한 일당 징역형

김현종 기자 | 승인 2020.04.29 17:01

남의 분묘들을 묘지주도 몰래 불법 개장한 일당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분묘 발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6)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와 공모해 불법 개장에 가담한 송모씨(56)와 홍모씨(55)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김씨는 묘지대행업체 대표, 홍씨는 장의 용역업체 대표다. 송씨는 홍씨 회사에서 일했다.

김씨는 2018년 4월 3일 양모씨로부터 제주시 구좌읍에 위치한 묘지 이장을 의뢰받은 후 송씨·홍씨와 짜고 허위로 개장 신고한 후 분묘를 발굴하기로 마음먹었다.

송씨는 그해 5월 21일 해당 분묘가 자신의 조상 묘인 것처럼 읍사무소에 허위 개장신고를 한 뒤 다음 날 홍씨와 함께 묘를 개장해 양지공원에서 화장하고 유골을 봉안했다.

셋은 이 같은 수법으로 한경면과 남원읍 소재 분묘까지 총 3기를 불법 개장했다. 김씨와 송씨 둘은 삼양동과 색달동 소재 분묘 2기까지 추가로 불법 개장했다.

이들의 범행은 불법 개장된 구좌읍 소재 분묘의 연고자인 김모씨의 고소로 발각됐다.

한편 김씨와 송씨는 각각 2018년 11월 제주지검에서 분묘발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김씨는 또 지난해 9월 제주지법에서 분묘발굴 및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후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현종 기자